



보도	2023.11.20.(월) 조간	배포	2023.11.17.(금)		
담당부서	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	책임자	실장	오상완	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장	김준호	(02-3145-8422)
	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장	고영집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장	조성우	(02-3145-5582)
	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	책임자	국장	윤정숙	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장	문정호	(02-3145-7702)

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

- 미추진 기업(129사)에 대한 회계·조사·공시분야 집중점검 실시 -

1. 그간의 경과

- 최근 상장사를 중심으로 2차전지,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,
 -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('23.4월)한 바 있으며,
 -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('23.6월)하였음
- 한편, 동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'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('23.11월)한 결과,
 -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*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(233사) 중 절반 이상(55%)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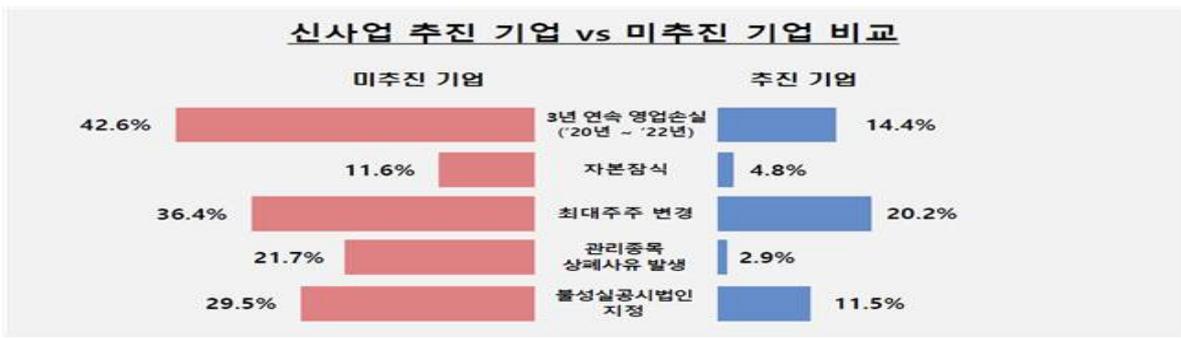
* ① 메타버스, ② 가상화폐·NFT, ③ 2차전지, ④ 인공지능, ⑤ 로봇, ⑥ 신재생에너지, ⑦ 코로나

2. 미추진 기업(129사)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

- 사업추진이 전무한 129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·조사·공시 등 관련부서의 추가검토 결과
 -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 상장회사 및 향후 유사사태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

- ① **(회계처리 부적정)**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,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·경영 안정성이 낮으며,
- 횡령·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·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
 - 이러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해지,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

※ [참고 : 미추진 기업의 재무적·비재무적 특징] ('23.11월 보도자료 발표내용)



- ② **(불공정거래 의심사례)**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·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되었고

* 예시) 최대주주 관련자가 CB 매수 → 신사업 추진 발표 → 주가 급등시 CB 전환권 행사 및 전환주식 대량 매도 → 주가 급락 → 사업 추진 철회

- 그 외 기업도 사업추진 역량,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함

※ [참고 : 미추진 기업의 불공정거래 연계 의심사례]

- ▶ (주)□□□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□□□사업 추진에 대한 언론홍보, 정관 사업목적 추가, 관련회사 지분인수 등을 통해 단기에 주가를 상승시키고 동 기간 중 최대주주와 관련 투자자의 CB전환 및 매도를 통해 대규모 차익 실현
- ▶ 관련회사 지분은 □개월 내 전량 매각, 반기보고서상 사업 미영위 공시



③ (상습 공시위반 전력)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·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*이 있는 기업이 25%(31사)이며,

* 과징금, 과태료, 경고, 증권발행제한조치 등

- 최근 실시한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'23년 반기보고서 중점 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%(84사)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

④ (빈번한 자금조달) 신사업 추진 발표 전·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*한 기업이 전체의 74%(95사)

* '21년 ~ '23.6월말 기준

- 동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(횟수 : 평균 4회, 주로 사모)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(254억원, 0.9회)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
- 따라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* 할 우려도 있음

* 자금유용 등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가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

3.

향후 대응

- 금융감독원은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은
 -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로 보아 관련부서가 적극 공조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

① (회계감리1·2국)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·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

- 신규사업 미추진 기업 중 이미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4사는 미추진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인* 및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적극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감리전환

* 신사업을 이유로 인수한 주식 또는 투자한 유형자산의 손상평가 등

-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4사를 심사대상으로 추가선정하였으며, 미착수 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심사에 착수할 예정
- 이후에도 공시부서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심사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 발견시, 회계처리 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계획임

② (조사1~3국)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 실시

-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고 기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

- 향후 주요 신사업 발표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

- 신규사업 홍보(언론보도 등), 홍보 前·後 주가급변, 주가 상승 후 대주주·재무적투자자(FI) 등의 주식 대량매도 여부 등 분석

③ **(공시심사실)**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이며

○ 과거 신사업 발표 전·후 자금조달과 관련한 실제 사용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하여 충실히 기재토록 할 것임*

* 미추진기업(129사) 중 하나인 (주)□□□의 유상증자 건에 대해서도 과거 신사업 관련 조달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중점심사 중

○ 또한 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, 허위 회계처리, 횡령·배임 등 위법사항 발견시 필요한 후속조치*도 신속히 진행할 것임

* 수사기관 통보, 조사·회계감리 부서 공유 등